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265호 2012. 3. 14(수)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의령군 공고 제2012-210호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1
- 의령군 공고 제2012-220호 의령군관리계획 (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사전 환경성검토 (초안) 공람·공고 ----- 2
- 의령군 공고 제2012-224호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의령군 공고 제2012-225호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

(다음면에 계속)

회 람									
--------	--	--	--	--	--	--	--	--	--

▲ 발행 : 의령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 570-2410, 행정 2410 FAX(055) 570-2040
 의령군 공고 제2012-210호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의령군수가 시행하는 『부곡소류지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부곡소류지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 : 의령군수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위 사업에 편입되는(아래 편입토지 및 지장물 내역) 토지 및 지장물 권리 일체
- ※ 보상대상 세부목록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의령군 건설도시과)에 비치되며, 개인별 보상대상은 개별 통지함.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12년 03월 14일(수) ~ 03월 28일(수)

나. 열람장소 : 의령군 건설도시과(주소: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의로63 의령군청 건설도시과)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의령군 건설도시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내용 제출

5. 보상시기 및 기타사항

가. 2012년부터 보상협의(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 통지)

나. 대상 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건설도시과 (055-570-2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편입토지 내역 : 별 첨

2012년 3월 14일

의 령 군 수

의령군 공고 제2012- 220호

의령군관리계획 (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공람·공고

의령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 (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4일

의 령 군 수

1. 명 칭 : 의령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2. 입안내용
 - 1) 유통 및 공급시설
 -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수도공급설비 (정수시설)	의령군 낙서면 여의리 산50-2번지 일원	-	증) 19,497	19,497	-	

■ **군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수도공급설비 (정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공급설비결정(신설) ○위치 : 의령군 낙서면 여의리 산50-2번지 일원 ○면적 : A = 19,4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하여 2020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반영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강변여과수를 정수처리 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안정되게 공급 할 수 있도록 군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정수시설)을 결정코자 함

3.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20일간**

4.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의령군 건설도시과

5. 의견 제출방법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의령군수 (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636-805/주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건설도시과)이나 전화(055-570-2733), FAX(055-570-204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본번	부번		지적	편입		
합계					19,497	19,497		
1	낙서면 여의리	241		전	63	63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2	낙서면 여의리	271	3	구	501	501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8
3	낙서면 여의리	271	5	임	444	444	전용두	낙서면 여의리 86
4	낙서면 여의리	272	8	전	482	482	진주강씨한사 공파종중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16-12
5	낙서면 여의리	272	9	전	225	225	진주강씨한사 공파종중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16-12
6	낙서면 여의리	307	1	임	304	304	전용진	낙서면 여의리 281
7	낙서면 여의리	307	2	전	367	367	전용진	낙서면 여의리 281
8	낙서면 여의리	307	3	전	2,136	2,136	전만두	낙서면 여의리 280
9	낙서면 여의리	307	4	전	744	744	전용진	낙서면 여의리 281
10	낙서면 여의리	318		전	1,061	1,061	전장환	낙서면 여의리 163
11	낙서면 여의리	319	1	전	446	446	전명수	낙서면 여의리 281
12	낙서면 여의리	산45	1	임	2,141	2,141	이정미	인천시 북구 상곡동 307 현대아파트 118-1501
13	낙서면 여의리	산50	2	임	5,236	5,236	전용진	낙서면 여의리 281
14	낙서면 여의리	산51	1	임	580	580	강위조 외 2 인	창원시 대원동 24-14
15	낙서면 여의리	산51	2	임	3,980	3,980	강위조 외 2 인	창원시 대원동 24-14
16	낙서면 여의리	산55	1	임	787	787	광주이씨박곡 종회	칠곡군 왜관면 매원리 390

의령군 공고 제2012 - 224호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조례·규칙 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의령군수

1. 조 례 명 :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2. 제안(개정)이유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 지원 대상에 전상군경 등 보훈 급여금을 받고 있는 유공자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범위 확대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 진작을 도모코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수정(안 제3조)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명칭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되어 개정

나.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로 보훈 급여금을 받는 6.25 또는 월남 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참여 명예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 전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코자 제한 조항인 2호를 삭제함

다.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안 제 4조 1항)

- 월 3만원 → 월 5만원으로 인상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의령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 할 곳

주 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실(FAX 055-570-2045, ☎ 055-570-2450)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담당(☎ 055-570-24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1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제1호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는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라 <u>6.25전쟁 및 월남전쟁에</u>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u>----- -----</p>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국가보훈처장이 「<u>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p> <p>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p>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4조(지원사업) (생략)</p> <p>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u>3만원</u> 지급</p> <p>2. ~ 3. (생략)</p>	<p>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p> <p>1. -----<u>5만원</u>-----</p> <p>2. ~ 3. (현행과 같음)</p>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의령군수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실시 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규채용 시 공고를 생략 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공고생략 범위 확대(안 제5조)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단, 5급 상당이상의 경우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가능)
-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임용 범위 확대 : 2종→4종
 -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안 제5조의2)

다.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하여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장애 규정 삭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의령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FAX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FAX 055-570-2042, ☎ 055-570-2200)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다. 기타 참고사항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임용절차 등) ① 별정 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 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 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 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 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 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임용절차 등) ①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신설></p> <p>② <u>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u>비서관 및 비서</u></p> <p>2. <u>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을 하는 경우)</u></p> <p>3. <신 설></p> <p>4. <신 설></p>	<p>제5조(임용절차 등) ①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u></p> <p>③ <u>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u></p> <p>1. <u>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u></p> <p>2. <u>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3. <u>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4. <u>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u></p>

현행	개정안
<p>④ <신설></p> <p>제5조의2조 <신설></p>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의령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부터 제2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4. (생략)</p>	<p>④ <u>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u></p> <p>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p> <p>제10조(직권면직) ----- ----- ----- -----</p> <p>1. <삭제></p> <p>2~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u>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u></p> <p>② (생략)</p>	<p>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u>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